2004 신임검사 인권교육자료집

인권정보자료실
CPc1.48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2004 신임검사 인권교육자료집
인권정보자료실
CPc1.48
법무부 인권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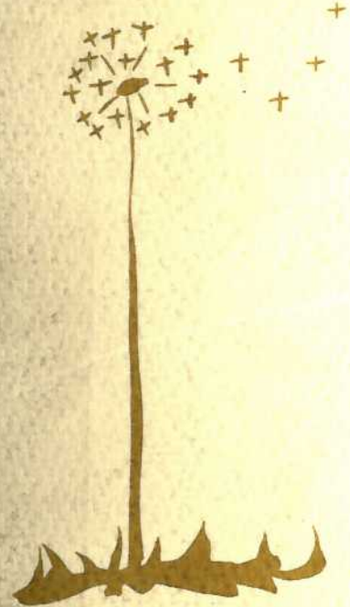

법무부 인권과

2004 신임검사 인권교육자료집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법무부 인권과

발 간 사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공소 제기와 유지,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및 재판 집행의 지휘·감독 등을 통하여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인권옹호기관으로서 피의자와 피고인,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할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은 원래 신임검사들을 위한 인권교육 교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만, 신임검사뿐만 아니라 각급 검찰청의 인권보호관과 인권보호담당관을 비롯한 모든 검찰공무원들이 꼭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료집에는 법무부·대검의 각종 인권보호관련 수사지침과 지시,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규약 중 특히 검찰업무와 관련이 깊은 고문방지협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내용, 우리나라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의 심사의견, 개인통보사건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정례 등을 실었으며, 그밖에 수사관계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법원 판결례, 형사절차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법무연수원의 신임검사교육 일정에 맞추어 서둘러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좋은 의견들을 보내주시면 내용을 보완하여 더욱 충실한 자료집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자료집이 인권문제에 대한 검찰공무원들의 관심을 드높이고, 나아가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길로 나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4년 4월 20일

법무부 인권과장

목 차

제1부 인권보호관련 수사 지침 · 지시 1

인권보호수사준칙 3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계획 1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 17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관련 지시 22

가정폭력사건 수사지침 24

성범죄 수사 및 공판관여시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지침 28

성매매 관련범죄 수사 및 공판시 유의사항 31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조사지침 33

구속적부심사 중인 사건의 공소제기 금지 지시 41

지문날인 거부사건 수사지휘 관련 지시 42

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 소환수사시 유의사항에 관한 특별지시 44

제2부 국제인권규약과 UN 권고사항 45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47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66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우리나라 정부 보고서에 대한
UN 인권이사회의 최종의견 77

국제인권규약과 실정법의 갈등사례 83

· UN 개인통보제도 83

· 신학철 사건에 대한 UN 인권이사회 최종견해 91

제3부 수사 관련 법원 판결례 99
수사 관련 손해배상소송 판례 101
형사절차 관련 대법원 판결례 108

제4부 수사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15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 155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규정에 대한 위헌심판 166
형법 제250조(사형제도) 등에 대한 헌법소원 190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214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248

제5부 수사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255
불법체포·감금·직권남용으로 검사 등 9명 고발 257
검사조사실 계구사용 금지 276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 278
검사에 대한 수사의뢰 281

제 1 부

인권보호관련 수사 지침·지시

인권보호수사준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검사를 비롯한 수사 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기본 준칙을 정함으로써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확립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의 기본적 책무】 ① 검사는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신속·공정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

② 검사는 이 훈령에 정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한다.

제3조【피의자 등의 권리 존중】 검사는 피의자나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부여된 권리를 최대한 존중한다.

제4조【변호인 접견 등의 보장】 검사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변호인의 접견 교통과 신문 절차 참여를 보장한다.

제5조【가혹 행위의 금지와 증거 배제】 ① 모든 수사 업무 종사자는 사건 관계인의 인격을 존중하며, 수사 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검사는 가혹 행위로 인하여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백은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거나 변호인과 접견 교통이 제한된 상태에서 한 자백도 이와 같다.

제6조【명예·사생활 등의 보호】 ①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 또는 신용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않으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의 내용이 기소 전에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제7조【임의 수사의 원칙】 ①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임의 수사를 활용하고, 강제 수사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한다.

② 검사는 강제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상자의 권익 침해 정도가 더 낮은 수사 절차와 방법을 강구한다.

제8조【장애인, 청소년의 보호】 검사는 심신 장애인 또는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 보호에 유의한다.

제2장 수사 준칙

제9조【내사할 때의 유의 사항】 검사는 범죄 정보를 수집 하거나 범죄를 내사하는 경우에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사건 관계인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10조【출석을 요구할 때의 유의 사항】 검사는 피의자나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한다.

1. 사건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수사상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하고, 같은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하지 않는다.
2. 출석 요구 방법, 출석 일시, 조사 시간 등을 정할 때에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생업이 지장받지 않도록 배려한다.
3. 사건 관계인이 장시간 대기하지 않도록 시차를 두어 출석을 요구하고, 조사가 늦어지거나 조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건 관계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
4. 신속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미리 조사할 사항을 검토한다.
5. 참고인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우편 진술서 또는 공조 수사를 활용한다.

6. 참고인에 대하여 정황이나 정상을 간단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우편(e-mail)이나 전화 청취서 등을 활용할 것을 고려한다.
7. 기업체 또는 그 대표자를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우편 진술서 등을 활용함으로써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한다.

제11조【체포·구속할 때에 지켜야 할 사항】 검사는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긴급체포서나 체포영장·구속영장 청구서에 체포 또는 구속을 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 체포 또는 구속되는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연령, 건강 상태, 도망의 우려, 가족의 동행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
3. 피의자에게 체포·구속하는 공무원의 소속과 성명,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구속 이유를 알려준다. 이와 함께 피의자에게 변호인 선임권이 있음을 알려주고 피의사실에 관하여 해명할 기회를 준다.
4.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검토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진술의 임의성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면담하여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5. 체포 또는 구속되는 피의자가 자해하거나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독극물이나 흉기 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제12조【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 검사는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가족 등에게 죄명, 체포하거나 구속한 일시와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서면 통지가 늦어질 경우에는 우선 전화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여 체포·구속한 기관과 담당 공무원을 알려 주도록 한다.

제13조【자수한 지명수배자의 수배 해제】 검사는 지명수배된 피의자가 자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이라도 수배를 해제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우선 지명수배를 해제한다.

제14조【진술 거부권의 고지】 검사는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는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진술 거부권 고지 확인서에 피의자의 서명을 받아 조서에 철한다.

제15조【자백 편중 수사의 지양】 ① 검사는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에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한 증거를 충실히 수집하고, 자백을 받기 위하여 무리한 조사를 하지 않는다.

② 검사는 피의자의 자백이 경험 법칙에 위배되는 등 합리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를 따져 그 신빙성 유무를 검토한다.

③ 검사는 공범의 진술이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유일한 증거 방법인 경우에는 그 증명력 판단에 더욱 신중을 기한다.

④ 검사는 수사를 과학적으로 하도록 애써야 하며,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노력한다.

제16조【조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 검사는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조사는 공정하게 하고, 사건 관계인을 친절히 대하며, 수사의 주재자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한다.
2. 사건 관계인의 성별, 연령, 심신 상태 등을 고려한다.
3. 진술인의 연령이나 지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진술하는 내용을 조리있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진술인이 연소자이거나 심신 장애 등의 사정으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때에는 본인이나 친족 등에게 보조인을 선정하도록 권유한다.
4. 고소인이나 피의자 등 이해관계가 다른 양쪽이 제출하는 증거 자료를 예단 없이 공정하게 조사한다.
5.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조사는 수사상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6.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사건 관계인 모두의 권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합의를 권유할 수 있다.
7. 피의자에게 혐의사실에 대하여 제대로 해명할 기회를 주고, 또 피해자에게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주장·입증할 기회를 충분히 준다.
8.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정해진 특정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신고자·피해자나 그 가족 등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9. 칼, 송곳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데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사건관계

인의 근처에 놓아두지 않는다.

제17조【심야 조사의 금지】 ① 검사는 자정 이전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도록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규정과 상관없이 조사받는 사람이나 그 변호인의 동의를 받았을 때,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했을 때, 체포기간 내에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할 때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자정 이후에도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8조【참여 직원 등의 단독 조사 금지】 ① 검사는 참여 주사를 비롯한 검사실 수사 업무 종사자가 검사가 없는 자리에서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지 않도록 한다.

② 검사는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조사를 받은 사건 관계인에게 직접 조서 기재 내용의 정확 여부를 확인한다.

제19조【압수·수색을 할 때에 지켜야 할 사항】 검사는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영장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 준다.
2.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생활과 명예,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한다.
3. 수사에 필요한 물건만을 압수한다. 다른 물건이 압수 대상물과 섞여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압수가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돌려준다.
4. 압수물이 문서인 경우에 사본이나 사진 등으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을 때에는 이를 활용한다. 특히 계약서, 영수증 등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나 기업의 회계 자료와 같이 경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배려한다.
5.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는 신속히 압수 목록을 교부한다.

제20조【금융 거래 자료를 추적할 때에 지켜야 할 사항】 검사는 금융 거래 자료를 추적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범죄 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 대상자와 유효 기간도 혐의 유무의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다.

3. 해당 계좌와 그 직전 직후로 연결된 계좌에 대하여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다.

제21조【통신제한조치 등을 할 때에 지켜야 할 사항】 사는 수사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통신제한 조치를 청구하거나 통신 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한다.

제22조【출국 금지 등을 요청할 때에 지켜야 할 사항】 검사는 수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출국 금지나 출국 정지를 요청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해제를 요청한다.

제23조【수사를 지휘할 때의 유의 사항】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수사 지휘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한다.

1. 지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한다.
2.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여부를 자세히 살펴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바로잡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불공정한 수사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게 하거나 송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4조【사건의 병합을 위한 조치】 검사는 다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같은 피의자를 수사 중인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건을 이송받는 등 병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다만,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가 종결된 후에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사건의 재배당 요청】 검사는 사건 관계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분이 있는 등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재배당을 요청한다.

제26조【사건을 결정할 때의 유의 사항】 검사는 사건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한다.

1.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였는지, 사건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지, 또는 억울한 사정이 없는지 등을 검토한다.
2. 피의자가 관련 사건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병합 수사나 재판을 받지 못하여 받게 되는 불이익을 고려한다.

3. 민사 소송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다른 절차가 진행 중에 있거나 피해 상당액이 공탁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한다.
4. 사건 발생의 동기, 경위 등을 살펴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특히 정의감에서 발생한 폭력 사범이나 부당한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범 등에 대하여는 그 정상을 충분히 고려한다.
5. 재기된 사건이나 이송된 사건은 신속히 종국 처분을 한다.
6. 수사 결과 인권 보호를 위하여 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며, 판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소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7조【고소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할 때의 유의 사항】 검사는 고소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한다.

1.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한다.
2. 고소가 취소되지 않은 사건은 처분 전에 고소인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다만, 법이론 등에 따라 기소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그와 같은 기회가 주어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불기소 결정문에는 고소 사실과 주요한 쟁점에 대한 판단이 빠지지 않도록 한다.
4.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송치 의견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원용하지 않는다.
5. 억울한 사정이 있는 고소인에 대하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심의에 회부하거나 다른 민사적인 구제 절차를 알려주는 등 피해가 복구되도록 도와준다.
6. 불기소 처분 당시에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거나 발견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다.

제28조【중간 처분을 할 때의 유의 사항】 검사는 기소중지 등 중간 처분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한다.

1.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소재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여 기소중지·참고인중지, 이송 등 중간 처분을 최대한 억제한다.
2.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참고인의 진술이 사건의 진상 규

명에 꼭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3. 참고인중지 처분을 한 때에는 신속한 종국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참고인 소재 수사를 한다.

4. 공조 수사의 방법으로 종국 처분을 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참고인이 관할 구역 밖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이송을 하지 않는다.

제29조 【구속 사건을 처리할 때의 유의 사항】 검사는 구속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한다.

1. 구속 기간의 연장은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하여 계속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처리한다.

3. 합의가 되거나 구속을 견뎌 내기 어려운 건강 상태에 이르는 등 구속 후에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고려한다.

제30조 【각종 통지의 이행】 검사는 고소 사건 중간 통지나 불기소 처분 통지 등 사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필요한 통지를 충실히 이행한다.

제31조 【공소 제기 후의 유의 사항】 검사는 공소 제기 후에나 공판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한다.

1. 합의 여부, 피고인의 법정 태도, 수용 기관에서의 품행 등 공소 제기 후의 사정까지 구형에 반영하여 적절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기소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고 그것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판부에 제출한다.

3.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판결이 번복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상소하지 않는다. 다만 법 이론에 다툼이 있어 새로운 판례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32조 【검사 외의 수사 업무 종사자의 의무】 모든 수사 업무 종사자는 이 훈령이 정한 내용을 철저히 지키는 등 국민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제3장 인권보호관

제33조 【인권보호관의 지정 · 운영】 ①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에 따른 보장을 강화하고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각급 검찰청에 인권보호관을 둔다.

② 대검찰청에는 감찰부장을 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하고, 각급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및 차장검사가 있는 지청에는 차장검사(차장 검사가 여러 명일 때에는 제1차장검사)를, 그 외의 지청에는 지청장을 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한다.

③ 인권보호관은 부부장 검사 이상의 검사를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부부장 검사 이상의 검사가 없는 검찰청에는 검사를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4조 【인권보호관의 직무】 인권보호관은 인권 보호에 필요한 실태 조사, 제도의 개선, 인권 교육, 심야 조사의 허가와 이 훈령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등 인권 보호와 관련된 조치를 시행한다.

제35조 【인권보호담당관의 직무】 ① 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 보호관의 직무를 보좌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의 지시나 위임을 받아 제34조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 보호와 관련한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지침의 폐지】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준수 등에 관한 특별 지시(법무 검이 61110-10941호, 2001. 8. 28.)는 이 훈령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계획

2004. 1. 8. 검찰제2과

Ⅰ. 검토 배경

○ 2003. 1. 1.부터 「인권 보호 수사 준칙」 시행 중

○ 국제인권기준과 그간의 검찰 제도개선 내용 및 2003. 12. 10. 「수사와 인권 토론회」 토론 결과 등을 반영하여 현행 준책의 미비점 개정, 보완

Ⅱ. 개정 방향 (안)

1. 검사의 실질적 수사 지휘 의무 강조 (수정)

○ 현행 준칙 규정상 「검사의 기본적 책무」로 「① 검사의 직접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장 의무, ② 준칙의 충실 이행이 담보되도록 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할 의무」만 규정 (제2조)

○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인권보장이나 적법절차를 담보하는 준사법관의 지위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을 철저하게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으로 준칙 수정

○ 「검사는 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수사 지휘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인권 교육과 필요한 교양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로 개정 (제2조 2항)

2. 대언론 관련 명예·사생활 등의 보호 (수정·추가)

○ 현행 준칙상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구속영장 등 내용의 기소 전 유출 금지"만 규정 (제6조 2항)

○ 수사 상황의 공보 관련 기본 원칙 구체적 명시

○ 수정·신설 규정(안)

②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사실은 물론 피조사자의 소환 여부·일시, 귀가 시간 및 구속영장 집행 시간 등 수사 상황을 기소 전에 공개할 수 없다.

③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에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을 포함한 일체의 수사 관련 서류나 증거물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 피의사실과 무관한 수사 상황만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각급 청의 공보담당관이 적정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제6조 제2~4항)

3.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체포·구속 통지 등 (수정)

○ 현행 준칙상 체포·구속시 본인 및 가족 등에의 통지 등 규정 (제11, 12조)

○ '외국인' 피의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로 고지 등 특칙 마련

○ 수정·신설 규정(안)

- 외국인 체포·구속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구속 이유 및 변호인 선임권 등 고지 외에 체포·구속된 외국인의 우리나라 주재 본국 영사관원 또는 명예 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통신할 권리 및 체포·구속된 사실에 대한 영사기관 또는 명예 영사기관에 통고 요청권 고지 및 고지 내용 조서 명기, 위 사항은 해당 외국어로 고지 (제11조 4호)

- 외국인 피의자 가족 등에 대해 해당 외국어로 체포·구속 통지 (제12조)

4. 여성·청소년의 인권 보장 (수정)

- ㅇ 현행 수사준칙은 검사가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별"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제16조 2호)하고 있을 뿐, 여성·청소년 보호에 관한 특별 규정이 없음
- ㅇ 여성, 청소년의 특성 배려 필요
- ㅇ 「검사는 여성·청소년을 조사하는 경우 그 특성을 감안하여 되도록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지 않는 장소에서 온정과 이해를 가지고 부드러운 어조로 조사하는 등 최대한 배려하여야 한다.」는 조항 신설 (제16조 3호)

5. 장애인의 권리 (수정)

- ㅇ 현행 준칙은 검사는 심신 장애인 조사시 심신 상태, 지적 능력 등을 고려하고, 그 진술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며, 보조인 선정을 권유하도록 규정 (제8조, 제16조)
- ㅇ 무료로 수화·통역 제공한다는 내용을 고지하는 등 구체적인 사항 규정 필요
- ㅇ 현재 검찰에서 「장애인을 위한 조사실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1997. 10.)에 따라, 장애인 조사실을 설치, 운용하고 있고, 청각장애인에게는 무료 수화·통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무료 수화·통역 제공 및 법률구조 신청권을 고지하도록 개정 (제16조 4호)

6. 의료권의 보장 (신설)

- ㅇ 현행 준칙에는 피의자의 의료권 보장 관련 규정 없음
- ㅇ 피의자가 질병이나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문화 필요
- ㅇ 「피의자를 조사하는 때에는 수시로 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특히 구금할 때에는 체포·구속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한 다음에 집행하여야 한다.」(제16조 11호)

7. 성범죄 피해자 조사시 유의사항 (신설)

- ㅇ 현행 준칙상 여성들이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범죄의 피해자 또는 참고인이 된 경우, 조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들의 규정이 없음

  ※ 법사위에서 조순형 의원 등이 준칙 제정 촉구
- ㅇ 소수자로서의 여성·아동 인권 문제가 강조되고 있고, 관련 법률 제·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므로 준칙에 명시 필요
- ㅇ 【성폭력 등 피해자 조사시 준수사항】

① 검사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그 연령, 심리상태, 후유 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급적 소환을 최소화하고, 소환하는 경우에도 피해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검사는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친절하고 온화한 태도로 질문하고,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질문이나 비난하는 발언 또는 저속한 표현을 삼가며 가급적 대질 조사는 피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제1항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원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동석을 허용하여야 한다.

⑤ 피해자가 청소년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자측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⑥ 검사는 성매매 여성을 조사하는 경우 선불금 등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이 법률적으로 무효임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의2)

8. 수사기록 열람 · 등사 청구권의 최대한 보장 (신설)

○ 현행 준칙상 피고인, 피의자 측의 수사기록과 증거에 대한 열람 · 등사권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없음

○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측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사기록 열람 · 등사권을 최대한 보장해 줄 필요가 있으므로 근거 규정 신설

○ 「검사는 공소 제기 후 증거 제출 전의 단계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 · 보조인이 기록의 열람 ·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 수사 기밀의 유지나 사건 관계인의 비밀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31조의2)

9. 형사보상 및 피해자 구조의 활성화 (신설)

○ 무리한 수사가 발생한 경우의 형사보상 또는 강력범죄로 인한 범죄 피해자의 구조 제도는 국민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긴요한 문제이므로 준칙에 규정 필요

○ 【형사보상 · 피해자 구조 제도의 안내】

① 검사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형사보상법상의 보상 청구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상 청구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가 구조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조사하고, 대상자일 경우에는 본인 또는 유족에게 구조 신청을 하도록 적극 권유하며, 사법경찰관에게도 그러한 취지를 수시로 교양하여야 한다. (제31조의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고문수사재발방지대책(법무부 검이 61100-2022, 2002. 11. 15.)에 따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와 관련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① 검사는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 변호인이 참여를 요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후 48시간 이내인 경우
2. 증거의 인멸, 은닉, 조작 또는 조작된 증거의 사용, 공범 도주 등 관련사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피해자, 참고인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변호인의 참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타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변호인 참여신청서와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 있는 때에는 검사는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대표변호인 1인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제1항 각호에 의하여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4조에 규정된 변호인의 피의자와의 접견 · 교통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피의자신문 참여 결정】 ① 검사는 변호인으로부터 신문 참여 요청을 받은 경우 신속하게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변호인 참여 허부 결정은 당해 신

문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검사는 변호인 참여신청서 상단에 참여 허용 여부 등을 기재한 후 원본은 기록에 편철하고,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 이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그 부본을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변호인의 좌석】 검사는 피의자 후방의 적절한 위치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변호인에 대한 퇴거요구】 ① 검사는 변호인의 신문 참여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변호인 없이 신문할 수 있다.

1. 검사의 신문에 개입·제지하거나 중단시키는 경우
2.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
3. 피의자가 답변에 이용하도록 메모지 등을 전달하는 경우
4. 피의자의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5. 모욕적인 언동 등으로 신문 방해를 야기하는 경우
6. 피의자 신문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7. 기타 위 제1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 준하여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을 퇴거하게 한 경우 그 구체적 정황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변호인의 의견진술과 조서열람】 ① 검사는 신문을 종료한 다음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의 진술이 자의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신문절차와 관련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고,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한 경우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조서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 작성을 완료한 다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변호인은 조서 열람 후 조서기재의 정확성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검사는 변호인이 이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조서 다음 순서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7조【변호인의 접견교통】 ① 검사는 피의자 신문 중 변호인이 접견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변호인의 접견으로 인하여 신문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고 신문을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제8조【변호인 참여 등의 기재】 ① 검사는 피의자 신문 중 변호인이 시종 참여한 경우는 물론 신문을 진행하고 있는 중간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경우, 신문 중 변호인이 퇴거하는 경우에도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하며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고 신문을 계속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제9조【피의자신문 중 긴급체포】 검사가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피의자를 신문하다가 긴급체포하는 경우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을 당해 신문 종료 시까지 계속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고소인 등과의 대질 조사】 ① 검사는 피의자와 고소인 등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건관계자를 대질조사함에 있어 피의자의 변호인이 참여할 경우 고소인 등이 선임한 변호사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2조 제2항, 제3항, 제3조 내지 제6조, 제8조 제1항의 규정은 고소인 등이 선임한 변호사를 참여시킴에 있어 준용한다.

제11조【수사기밀 누설 방지】 검사는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로 인하여 수사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규정】 본 지침은 검찰수사관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청직원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03. 1. 2.부터 시행한다.

〈별지 1〉

○ ○ 지 방 검 찰 청

허가	불허	거 부 사 유
		☐ 제2조 제1항 (1호) 해당 ☐ 기타( )

수 신 **주임검사**

제 목 **변호인 참여신청**

아래 피의자에 대한 ○ ○ 피의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신청합니다.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변호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거(사무소)	
	전 화 번 호 (FAX 번호)	

※ 첨부 : 변호인선임신고서 1부.

2003. 1. .

신청인 : 변호사 ○ ○ ○ (인)

〈별지 2〉

○ ○ 지 방 검 찰 청

수 신 **변호사 ○ ○ ○**

제 목 **변호인 참여 불허 통지**

피의자 ○ ○ ○ 에 대한 ○ ○ 피의사건에 관한 변호인의 신문 참여신청은 아래 사유로 불허함을 통지합니다.

☑ 체포 또는 구속 후 48시간 미경과

☐ 증거의 인멸, 은닉, 조작 또는 조작된 증거의 사용, 공범 도주 등 관련사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 피해자, 참고인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험 발생의 우려

☐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하지 아니함

☐ 기타 수사에 현저한 지장 초래( )

2003. 1. .

○ ○ 지방검찰청

검 사 ○ ○ ○ (인)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관련 지시

〈2003. 11. 14. 대검 형사 61100 - 5027〉

1. 2003. 11. 11. 대법원은 피의자 송두율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불허처분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①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불허하는 처분은 구금에 관한 처분으로서 준항고의 대상이 되며, ② 형사소송법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체포·구금된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적법절차주의에 관한 헌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구금된 피의자는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③ 다만, 변호인참여권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며,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2. 따라서, 각 청에서는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도록 하고, 참여를 불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 불허처분을 하여야 하며, 아울러 변호인 참여 불허처분과 관련하여 준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제한사유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3.「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대검 기획61100-1831, 2002. 12. 30)」 및 법무부에서 준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규정된 변호인 참여 불허사유 및 퇴거요구사유를 첨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운영지침 중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는 개정할 예정이어서 위 참여 불허사유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요지」. 끝.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요지

❑ 변호인의 참여 불허사유 (지침 제2조 제1항, 개정안 제232조의 2 제1항)

- ㅇ 증거의 인멸, 은닉, 조작 또는 조작된 증거를 사용할 염려가 있는 경우
- ㅇ 공범도주 등 관련사건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ㅇ 피해자, 당해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참고인)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
- ㅇ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변호인의 참여를 원하지 아니하거나(위 지침),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위 개정안) 등

❑ 신문 참여 변호인에 대한 퇴거요구사유 (지침 제5조 제1항, 개정안 제232조의 2 제4항)

- ㅇ 신문에 개입하거나, 신문을 제지 또는 중단시키는 경우
- ㅇ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
- ㅇ 피의자의 진술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 ㅇ 모욕적인 언동 등으로 신문방해를 야기하는 경우
- ㅇ 피의자 신문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가정폭력사건 수사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최근 가정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1998. 7. 1.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가정폭력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반 형사사건처럼 처리되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충실하지 않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고자 수립한 것임.

2. 기본 방향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응급조치, 임시조치 및 가정법원송치를 활성화하여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처리 여행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활용하여 피해자 보호에 최선

○ 경찰청의 "가정폭력범죄 수사요령" 지침에 대한 일선 경찰의 실질적 시행여부를 지도, 점검

3. 경찰 단계

○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제도 시행

- 가정폭력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실정에 따라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또는 가정폭력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수사의 전문화를 도모하도록 할 것
- 전담경찰관은 가급적 여자 경찰관이나 경험 많은 경찰관으로 지정

○ 신고접수대장 비치, 관리 철저

- 신고를 하여도 현장에 출동을 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아니하므로 필히 가정폭력사건 신고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경찰관이 신고자, 주소, 전화 또는 휴대폰 번호, 가해자, 피해내용 등 신고 내용을 기재하도록 할 것
- 유치장감찰시 위 신고대장에 대한 검사의 점검, 결재를 받도록 할 것

○ 응급조치 철저

- 위 신고대장에 담당경찰관의 출동여부, 출동시 응급조치여부 및 그 조치사항 요지 등을 기재하도록 할 것
-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응급조치를 하고, 응급조치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할 것

○ 임시조치 적극 신청

-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폭력행위 재발 우려시 피해자에게 필히 임시조치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고 그 신청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물은 다음 피해자의 요구가 있으면 가정폭력의 사안을 고려하여 가급적 임시 조치를 신청하도록 할 것

○ 상담소, 보호시설 활용 제고

- 가정폭력사건 신고 또는 수사시 피해자에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보호시설을 적극적으로 고지하여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요구시 상담소 등에 인도하도록 할 것

-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등과 연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문가와 상담하도록 권유하고 상담시 그 상담기록에 편철토록 할 것

○ 입건 기준

-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을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입건토록 할 것

○ 검찰송치시 경찰의견 개진 활성화

- 송치서 비고란 및 의견서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담당경찰관의 의견을 가급적 기재토록 할 것

4. 검찰단계

○ 검찰 수사지휘 단계

- 경찰이 임시조치를 신청할 경우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자가 원하고 사안이 경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임시조치를 청구할 것

○ 사건 송치후 단계

- 배당

· 원칙적으로 가정폭력전담검사에게 집중 배당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것

- 수사

· 원칙적으로 가해자, 피해자를 동시 소환 조사하고 피해자의 가정유지 의사 여부 파악에 주력할 것

·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임시조치를 청구할 것

○ 사건 처리 단계

- 가정보호사건 처리 활성화

· 가정폭력사건은 그 성질 ·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피해자의 의사, 가정의 평화와 안정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가정법원 송치할 것

- 구약식기소 지양

· 가정이 유지되는 사건의 경우 구약식을 하게 되면 그 벌금을 실질적으로 피해자도 부담하게 되므로 구약식기소 보다는 사안을 고려하여 가급적 가정법원송치나 기소유예처분을 활용할 것

- 기소유예 처분시 서약서 징구

· 기소유예 처분할 경우 당사자를 소환하여 피해자의 가정보호 의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음을 강조하고 향후 재발 시에는 엄중 처벌 경고 및 자필 서약서 징구할 것

※ 구체적 처리기준은 추후 일부 일선 청의 가정폭력전담검사들의 의견을 취합, 검토 후 시달 계획

5. 참고사항

○ 대검 강력 61100-1991호 (1998. 9. 1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시행에 따른 사건처리 지시를 참고하기 바람.

○ 가정폭력범죄 단속과 관련하여 가정폭력 발생시 먼저 신고를 받아 현장을 찾게되는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일선 청에서는 위 지침 내용 중 경찰단계 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유치장 감찰 또는 가정폭력전담검사가 정기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방법 등으로 해당 경찰을 지휘, 지도하여 주시기 바람.

○ 경찰청에서 1999. 4. 경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구체적 수사방법에 관한 "가정폭력범죄 수사요령"이라는 지침을 수립, 일선 경찰에 시달하여 시행하고 있음.

성범죄 수사 및 공판관여시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지침

〈대검 예규 제290호, 강력 61100-413(1999. 2.23.)〉

1. 목 적

성범죄 피해자 수사 및 공판관여시 수사담당자가 유의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피해자가 수사 및 공판수행 과정에서 성범죄로 인한 고통 이외에 또 다른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

2. 수사 및 공판담당자의 기본자세

- ㅇ 수사 및 공판관여는 엄정하게 시행하되, 성범죄로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더 이상의 고통이 가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ㅇ 진지하면서도 정중한 태도로 수사 및 공판에 임함으로써 피해자가 모욕이나 조롱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
- ㅇ 엄정 중립의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당사자들로부터 수사 및 공소유지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수사상 유의사항

가. 범죄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

- ㅇ 범죄현장 또는 그 직후의 성범죄 피해자를 발견한 경우 범죄증거의 철저한 수집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
- ㅇ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
- ㅇ 정액, 체모의 채취나 상해 부위 및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증거수집을 위해 피해자의 몸을 조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양해를 구한 다음 의사 또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장 피해가 적은 방법으로 조사할 것

- ㅇ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신체 정신장애자인 경우와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 등에게 인계시까지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할 것
- ㅇ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

나. 피해자의 소환절차상의 피해자 보호

- ㅇ 피해자 소환 전에 수사가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가급적 피해자의 소환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
- ㅇ 피해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급적 전화 등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고, 타인을 통하여 연락을 할 경우에는 피해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소환이유 등을 함부로 고지하지 말 것
- ㅇ 부득이 소환장을 발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봉함우편을 사용하도록 할 것
- ㅇ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출장조사를 적극 활용할 것
- ㅇ 재소환에 대비, 피해자의 비밀보호에 편리한 연락장소를 조서에 기재할 것

다. 조사환경

- ㅇ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여 가급적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에 평온하게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조사할 것
- ㅇ 조사시 참여자는 가급적 여성으로 하되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할 것
- ㅇ 피해자가 보호자 등 신뢰관계가 있는 자의 동석을 원하고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 친지 등 보조자의 입회를 허용할 것
- ㅇ 13세 미만의 피해자는 반드시 보호자의 참여 하에 조사할 것

라. 조사방법

- ㅇ 피해자가 정신적인 원조를 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친절하고 온화한 태도를 유지할 것
- ㅇ 해당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경험이나 성범죄를 당할 당시의 기분, 가해자의 사정 여부 등 피해자가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질문이나

공소유지에 필요하지 아니한 질문은 수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삼갈 것

- ㅇ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노골적인 호기심에서 비롯된 질문은 하지 말 것
- ㅇ 수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범행의 동기를 유발했다는 식의 추궁을 자제할 것
- ㅇ 모든 조사와 신문은 분리하여 하고 가해자의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급적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는 방법을 택할 것
- ㅇ 대질신문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시행하고, 대질방법 등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할 것
- ㅇ 특별한 이유없이 합의 또는 고소취소를 종용함으로써 특정 당사자를 비호한다는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할 것

4. 공소유지상 유의사항

- ㅇ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신청하고,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 등 공소유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
- ㅇ 사전에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는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시켜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것
- ㅇ 공판관여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에 대하여만 신문할 것
- ㅇ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저속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
- ㅇ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특별한 필요없이 피해자의 성경험, 과거 경력 등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질문을 할 경우에는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적극 활용할 것

성매매 관련범죄 수사 및 공판시 유의사항

1. 목 적

- ㅇ 청소년성매매 및 인신매매, 감금, 협박, 성매매행위자의 채무이용 등에 의하여 강요된 반인륜적 성매매범죄를 엄단함으로써 성매매 근절을 도모하고자 함.

2. 성매매 관련범죄 수사시 유의사항

가. 단속현장에서의 증거확보 철저

- ㅇ 쇠창살, 잠금장치, 감시카메라 등 성매매여성에 대한 감금 또는 감시를 위한 시설의 설치여부 확인 및 사진촬영
- ㅇ 채권채무관계 증서, 근로조건관계증서, 관련 장부 및 일지 등이 있는지 확인 및 압수
- ㅇ 성매매여성 중 청소년이 있는지, 타인 또는 위 · 변조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
- ㅇ 소방, 전기, 구조물 등 안전과 관련된 불법사항 확인 및 사진촬영

나. 청소년성매매, 인신매매 등 반인륜적 성매매 관련범죄 엄단

- ㅇ 반인륜적인 청소년성매매 및 인신매매, 감금 등에 의하여 강요된 성매매 관련사범(업주, 알선업자, 불법 직업소개업자, 신분증 위조행위자, 청소년의 성을 산 자 등)은 끝까지 추적 · 필포하여 엄벌
- ㅇ 청소년성매매 관련사범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소정의 신상공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철저 수사
- ㅇ 인신매매, 감금 등에 의한 성매매 강요사범은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외에 감금, 부녀매매 등으로도 의율
- ㅇ 소방, 전기, 구조물 등 안전과 관련된 불법사항은 소방법위반, 건축법위반 등으로 입건하고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 병행

다. 선불금 등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의 무효 고지

○ 업주 등에게 선불금, 벌금, 지각비, 식비, 의상비 등 명목에 상관없이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 후 이를 조서에 기재하고 채권관련 증서 임의제출시 소유권포기서를 받아 압수,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무효임을 고지

3. 성매매여성 조사시 유의사항

○ 수사상 꼭 필요한 경우외에는 성매매여성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질문을 지양하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이유없는 비난이나 저속한 표현 사용 금지

○ 성매매여성이 보호자 등 신뢰관계가 있는 자의 동석을 원하고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 친지,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등 보조자의 동석 허용

○ 성매매여성에게 여성복지상담소나 긴급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원하는 경우 여성복지상담소나 긴급보호시설에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

○ 선불금, 벌금, 지각비, 식비, 의상비 등 명목을 불구하고 채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채무는 무효이며 업주 등이 폭력배를 동원하여 채무변제 강요시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고지

4. 공판시 유의사항

○ 성매매여성에 대한 증인신청 및 증인신문은 공소유지에 꼭 필요한 범위내에서 실시하고, 성매매여성이 모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

○ 필요시 법원에 비공개 재판 요청

○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처벌의사 등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을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성매매여성의 경력 등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을 신문하는 경우 법원에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조사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 제6995호, 2004. 3. 12. 시행)에 따라 법 제2조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중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수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13세 미만 아동, 장애인의 보호】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과정에서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이하에서는 피해아동 등이라 함)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 등을 조사하는 경우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녹화하고, 조사 횟수를 최소화하는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 등의 인권 보호에 특히 유의한다

제3조 【전담검사의 지정·운영】 ①각 청의 장은 청의 실정을 고려하여 피해아동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전담검사는 피해아동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사경 지휘 및 송치 후 사건처리를 전담한다.

제4조 【전담경찰관의 지정·운용】 ①각 경찰서의 장은 사건조사경험이 풍부하고 법률적 소양을 갖춘 사법경찰관리를 피해아동 등에 대한 전담경찰관으로 지정하여 운용한다.

②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 등에 대한 성폭력사건의 접수 즉시 전담검사에게 발생 및 접수 내용을 유선 또는 고소장·신고서 등의 팩스 송부나 서면으로 보고한다.

③전담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검토한 후 피해아동 등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진술 녹화과정에 직접 참석하여 지휘할 것인지 여부를 통보한다.

④사법경찰관은 조사 과정에 전담검사가 직접 참석한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진술 녹화를 실시하고, 녹화 직후 피해아동 등의 진술 요지를 포함한 수사관련 사항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⑤사법경찰관은 조사 과정에 전담검사의 참석 없이 피해아동 등에 대한 진술 녹화가 실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항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전담검사에게 팩스 등으로 송부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조사 계획의 수립】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 등에 대한 조사에 앞서 피해아동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피해아동 등의 연령 및 인지능력,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이전 상황 등을 점검하고 이를 수사보고서 등으로 작성, 기록에 편철한다.

제6조【조사 단계별 유의 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 등의 성별, 연령,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한다.

1. 제1단계 : 신뢰관계의 형성

가. 피해아동 등이 조사 초기에 갖게 되는 주저, 불안, 불신 등을 해소하고, 조사자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조사자는 피해아동 등에게 조사실에 있는 모든 사람을 소개해 주고 왜 그 사람들이 이 방에 있는지 피해아동 등의 연령, 인지 능력 등에 적합한 말로 설명한다.

(2) 피해아동 등이 조사 장소까지 오는 길 혹은 그날 학교나 가정에서 겪은 일 등과 같은 일반적인 이야기로 시작하여, 피해아동 등에게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권한다.

(3) 피해자가 3세 이하의 아동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언어 발달이나 인지 능력 등을 감안하여 아동심리전문가 등 전문가의 의견을 참작하고, 놀이도구나 사진 등과 같은 소품을 이용하는 등 조사자와 피해아동 등 사이의 신뢰관계 형성에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를 기울인다.

(4) 조사의 기본규칙을 설명함에 있어서 피해아동 등에게 진실한 것, 실제 일어난 일을 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조사자는 주로 듣는 역할을 담당한다

는 점을 설명하고, 피해아동 등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분명한 질문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다시 질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나. 거짓과 진실에 대한 이해도 측정

피해아동 등의 연령이나 인지 능력 등을 감안하여 거짓말에 대한 이해도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조사시 피해아동 등 진술의 신빙성을 점검해 둔다.

다.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대화 기법

(1)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과 같이 피해아동 등이 좋아하는 주제나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한다.

(2) 피해아동 등에게 자신의 느낌, 소리, 냄새, 맛을 묘사하도록 한다.

2. 제2단계 : 피해아동 등의 '자유로운 설명' 방식에 의한 진술 듣기

가. 방법

(1) 조사자는 피해아동 등 스스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간섭받지 않고 설명하도록 하여 피해아동 등에게 그들 자신의 언어로 사건에 대하여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예, "네가 그 일에 관하여 모두 말해 보렴")

(2) 피해아동 등이 말하기를 주저하거나 진술능력이 취약하더라도 조사자는 인내심을 가지고 피해아동 등의 진술을 기다리는 등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3) 피해아동 등이 자신의 설명을 끝낸 것이 분명하다고 보여지면 조사자는 "응", "그래" 또는 피해아동 등의 마지막 진술을 반복하는 등 진술을 용이하게 하는 '촉진어'를 사용하여 피해아동 등의 설명을 풍부하게 이끌도록 한다.

나. 금지 사항

(1) "잘 하고 있다"는 언어적 강화 행위

(2) 안거나 손잡아주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3) "말을 하면 집에 보내줄게" 등의 대가 제공의 언급

(4) 기타 피해아동 등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일체의 언행은 하지 않도록 한다.

다. 피해아동 등의 진술 거부시 조치사항

(1) 피해아동 등이 사건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경우 조사자는 그 조사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다각도로 숙고해야 한다.

(2) 조사자는 수사상황 및 피해아동 등 관련 전문가와 법정대리인 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사의 종료가 피해아동 등에게 최선이라고 판단되면 일단 조사를 종료하고, 피해아동 등의 보호자 등에게 그 사유를 설명한 후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철한다.

3. 제3단계 : 피해아동 등에게 질문하기

가. 방법

(1) 조사자는 가능한 한 명확하고, 간단하며, 짧은 내용으로 질문을 하여야 한다.

(2) 조사자는 생물학적, 신체적 용어에 대해 피해아동 등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아동 등의 진술에 특이하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으면 피해아동 등에게 부드럽게 설명을 구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한다.

(3) 조사자는 피해아동 등의 답변이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되도록 질문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다른 모든 질문방식으로는 피해아동 등으로부터 어떠한 정보도 이끌어낼 수 없을 경우 피해아동 등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어떤 대상을 예시하는 등의 방법을 예외적으로 사용한다.

나. 피해야 하는 질문 내용

이중부정하거나 아주 긴 질문, 전문법률용어를 포함한 질문, 추상적이고 가정적인 질문은 피하여야 한다

4. 제4단계 : 조사의 종료

조사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종료한다.

(1) 조사자는 피해아동 등의 진술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는 사항들을 피해아동 등이 사용한 용어로 요약하여 그에게 확인한다.

(2) 조사자는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점검한다.

(3) 피해아동 등에게 마음을 진정시킬 시간을 제공하여 피해아동 등으로 하여금 안정된 마음으로 조사실을 떠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제7조【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 등을 조사하는 때에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아동 등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결정시 사건의 증인이거나 범죄에 직 ·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은 배제하는 등 피해아동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데 유의하여야 한다.

③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동석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아동 등의 시야가 미치지 않는 적절한 위치에 좌석을 마련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동석자의 퇴거를 요구하고 조사할 수 있다.

1. 조사 과정에 개입하거나 조사를 제지 · 중단시키는 경우
2. 피해아동 등을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
3. 피해아동 등의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4. 기타 동석자의 언동 등으로 인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제3항의 사유로 동석자를 퇴거하게 한 경우 그 사유를 피해아동 등 측에 설명하고 그 구체적 정황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제8조【장애인에 대한 특칙】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에게 보조인을 선정하도록 권유하고, 선정된 보조인을 제7조의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청각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인 때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의 의견을 참작하여 수화 또는 문자 통역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조사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정신지체인인 때에는 면담을 통하여 진술 능력 등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보조인 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진술을 녹화할 때의 유의 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 등의 진술을 녹화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한다.

1. 피해아동 등에 대한 진술 녹화시 피해아동 등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진술 녹화의 취지 및 증거능력의 특칙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아동 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진술 녹화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안된다.
2. 조사장소는 피해아동 등의 특성을 고려, 피해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적정한 환경을 갖추고 공개되지 않는 장소를 마련하는 등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에 유의한다. 또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놀이기구는 조사 이전에 활용하고 조사시에는 최소한의 놀이기구만 사용하여 피해자가 조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3. 진술 녹화를 시작할 때에는 누가, 언제, 누구를 상대로, 어떤 범행과 관련하여 조사하는지, 동석자는 누구인지 소개하는 방법으로 시작한다.
4. 진술 녹화시 피해아동 등의 표정과 움직임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하고, 2개 이상의 비디오테이프(CD 포함)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비디오테이프에 종료와 재개의 취지를 말하여 녹화한다.
5.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진술 녹화를 종료할 경우 종료사실을 말하여 녹화하고, 녹화테이프에는 녹화일자, 장소, 시간, 붙임 1) 아동성폭력피해사건 지휘부(또는 붙임 2) 장애인성폭력피해사건 지휘부)의 일련번호 등을 기재한 라벨을 붙여 압수물 중 특수압수물에 준하여 보관 및 처리하고, 열람·등사 신청이 있는 경우 전담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한다.
6. 비디오테이프(CD 포함)는 2부를 녹화하여, 원본테이프는 조사 후 즉시 봉인하여 검찰청에 보관하며, 사본테이프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 활용한다. 비디오테이프 원본은 재판부의 요구나 피고인의 이의 제기가 있을 때에 한하여 판사 또는 전담검사의 지휘를 받아 개봉할 수 있다.
7.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 등 사건을 송치할 때 기록표지에 붙임 3)의 '아동성폭력피해사건' 또는 '장애인성폭력피해사건'이라는 고무인을 찍어 비디오테이프와 함께 송치한다.

제10조 【증거보전절차의 활용】 ①검사는 피의자가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아동 등의 연령,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을 적극적으로 청구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아동 등과 그 법정대리인의 증거보전 청구 요청을 참작한다.

②사법경찰관은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에게 제1항의 증거보전을 청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검사는 증거보전청구서에 사건의 개요, 증명할 사실, 증거 및 보전의 방법,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장애인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실시할 경우, 검사는 피해아동 등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 법정외 신문 또는 피의자와의 분리신문을 요청하거나, 피의자의 반대신문을 법관이 대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피해아동 등이 편안한 상태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⑤검사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절차에 따라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또는 녹화된 비디오테이프를 사본하여 증거자료로 활용한다.

제11조 【피의자 등과 대질 조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 등의 연령, 정신적 압박감 등을 고려하여 피해아동 등에 대한 조사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은 분리하여 실시하고, 대질신문은 최후의 수단인 경우 예외적으로 실시하되 대질방법 등에 대한 피해아동 등측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

제12조 【수사기밀 누설 방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 등의 진술 또는 녹화된 비디오테이프의 유출 등으로 피해아동 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0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지침의 폐지】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 조사지침(대검 강력 61100-732호, 2003. 6. 5.)은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붙임 3)

"아동성폭력피해사건" 고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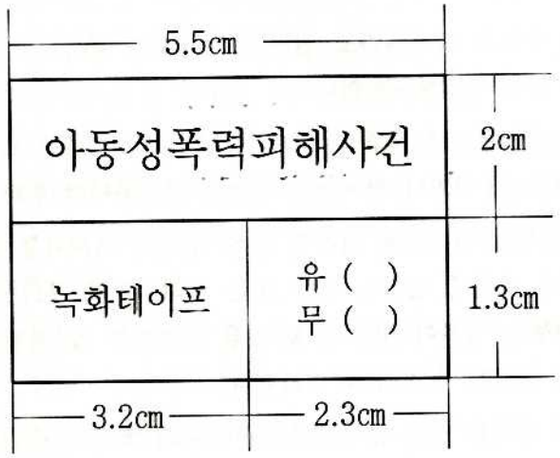

"장애인성폭력피해사건" 고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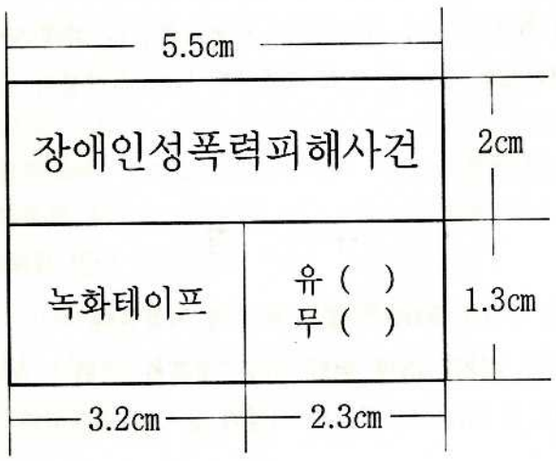

구속적부심사 중인 사건의 공소제기 금지 지시

〈2004. 4. 8. 대검 형사 4972호〉

1. 헌법재판소는 2004. 3. 25.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다음 검사가 법원의 결정전에 기소하는 경우 법원은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어 구속적부심사의 청구인에게 법원의 실질적인 심사를 받을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아래와 같이 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된 사건에 대한 처리방안을 지시하니,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인권보장기관임을 명심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나. 구속적부심사 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받는 즉시 담당검사에게 유선 또는 직접 그 사실을 보고하고, 지체없이 전산입력토록 할 것

다. 담당검사는 직원으로부터 통보를 받는 즉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관계서류를 법원에 송부토록 할 것

라. 비록 사건결재가 진행중이거나 결재가 종료된 후일지라도, 법원으로부터 구속적부심사 청구 접수사실을 통지받은 후에는 공소를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마. 구속기간이 만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1차 만기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속기간 연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2차 만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기록에 편철하고 공소를 제기하되, 피의자 및 그 가족 또는 변호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할 것

바. 공범인 수인의 피의자들이 수사지연을 목적으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기록에 편철한 후 공소를 제기하되,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끝.

지문날인 거부사건 수사지휘 관련 지시

〈2004. 3. 4. 대검 형사 3064호〉

1. 현재 피의자 등이 지문날인을 거부할 경우 지문채취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그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 경찰청장으로부터 지문날인 거부자의 처리에 관한 협조요청이 있어 별첨「지문날인 거부사건 수사지휘시 유의사항」을 시달하니 그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문날인 거부사건 수사지휘시 유의사항」 끝.

지문날인 거부사건 수사지휘시 유의사항

▢ 경찰의 처리 실태

○ 즉심대상자, 고소·고발사건 중 불기소 처분 대상 피의자 등을 제외한 42개 범죄의 형사입건피의자 등에 대하여 수사자료표 작성시 지문채취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5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6조,
  지문을채취할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

○ 타인의 성명모용 방지, 정확한 인적사항 특정 위해 피조사자의 지문 채취

※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으면 상습범·누범에 대한 판단자료인 전과기록을 활용할 수 없게 되며, 수사·재판·형집행에 지장 초래

○ 2002. 9. 11. 이후 체포·구속에 이르지 않은 피의자 등이 지문날인을 거부할 경우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지문채취

※ 2002. 9. 11. 지문채취 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경범죄처벌법에 대해 법원이 영장주의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심판제청

▢ 문제점

○ 불구속 피의자 등이 지문날인을 거부할 경우, 지문채취를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영장없이 지문을 채취할 경우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에 위배될 우려

※ 구속피의자의 경우 강제로 지문을 채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며, 행형법 제10조, 제68조에 의하여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채취 가능

○ 지문채취를 위한 검증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영장 발부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환불응 등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저하

▢ 지문날인 거부사건 수사지휘시 유의사항

○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불구속 피의자에 대하여는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지문을 채취

○ 사법경찰관이 지문날인 거부자에 대한 지문채취를 위해 검증영장을 신청하거나 이와 관련된 지휘 건의를 할 경우, 신속히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검토한 후 영장청구 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사지휘

○ 영장사무 담당 직원은 사법경찰관리가 동 영장을 신청할 경우 타 영장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법원의 영장발부 즉시 사법경찰관리에게 이를 통보하는 등 경찰의 지문채취를 위한 업무처리가 최대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 소환수사시 유의사항에 관한 특별지시

〈2004. 2. 14. 대검 기획 856〉

○ 「인권보호수사준칙」(법무부 훈령 검이 제474호, 2002. 12. 17.), 「구속 피의자 장기대기 억제지시」 (대검 기획 61010-1278호, 1996. 10. 15.) 관련임.

○ 구속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 소환한 경우, 구치감에서 장기간 대기시키거나, 조사를 하지 않고 되돌려 보내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소환 후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하지 않고 되돌려 보낼 경우 수사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히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위 지시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 아울러, 구속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잦은 소환이 접견교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최근 일부 검찰 인지사건 수사 과정에서 강압수사, 거래성 회유 의혹이나, 수사권 남용의 시비가 있었던 만큼, 그동안의 수사관행을 다시 점검하여 「인권보호수사준칙」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제 2 부

국제인권규약과 UN 권고사항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채택일 1966. 12. 16 / 발효일 1976. 3. 23 단, 제41조는 1979. 3. 28에 발효 / 당사국 수 151 / 대한민국 적용일 1990. 7. 10[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시민적, 정치적 자유 및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국제연합 헌장상의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며,

타 개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

다음의 조문들에 합의한다.

---

1) 유보 : 대한민국 정부는 동 규약을 심의한 후, 동 규약의 제14조 5항, 제14조 7항, 제22조 및 제23조 4항의 규정이 대한민국 헌법을 포함한 관련 국내법 규정에 일치되도록 적용될 것임과 동 규약 제41조상의 인권이사회의 권한을 인정함을 선언하며, 이에 동규약에 가입한다.
유보철회 : 상기 유보선언에 대해 대한민국은 동 규약 제23조 제4항을 1991년 3월 15일 유보철회하였으며(조약 제1042호), 제14조 제7항에 대해 1993년 1월 21일 유보철회하였음(조약 제1122호).

제 1 부

제1조 1. 모든 사람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2. 모든 사람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적 경제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및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은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비자치지역 및 신탁통치지역의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여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동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 2 부

제2조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현행의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 및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3.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a)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 그러한 침해가 공무집행 중인 자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도록 확보할 것.

(b) 그러한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하여, 권한 있는 사법, 행정 또는 입법당국 또는 당해 국가의 법률제도가 정하는 기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 권리가 결정될 것을 확보하고, 또한 사법적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발전시킬 것.

(c) 그러한 구제조치가 허용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이 이를 집행할 것을 확보할 것.

제3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규정된 모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1.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비상사태의 존재가 공식으로 선포되어 있을 때에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당해 사태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이 규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당해국의 국제법상의 여타 의무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또는 사회적 출신만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전항의 규정은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에 대한 위반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3.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행사하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위반하는 규정 및 위반하게 된 이유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이 규약의 타 당사국들에게 즉시 통지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위반이 종료되는 날에 동일한 경로를 통하여 그 내용을 통지한다.

제5조 1.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서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행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규약의 어떠한 당사국에서 법률, 협정, 규칙 또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또는 현존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에 대하여는, 이 규약이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인정의 범위가 보다 협소하다는 것을 구실로 동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부

제6조 1.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사형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 사형은 범죄 당시의 현행법에 따라서 또한 이 규약의 규정과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법률에 의하여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될 수 있다. 이 형벌은 권한 있는 법원이 내린 최종판결에 의하여서만 집행될 수 있다.

3. 생명의 박탈이 집단살해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의 당사국이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따라 지고 있는 의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위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한다.
4.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누구나 사면 또는 감형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사형선고에 대한 일반사면, 특별사면 또는 감형은 모든 경우에 부여될 수 있다.
5. 사형선고는 18세 미만의 자가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되며, 또한 임산부에 대하여 집행되어서는 아니된다.
6.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사형의 폐지를 지연시키거나 또는 방해하기 위하여 원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1.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2. 어느 누구도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3. (a) 어느 누구도 강제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b) 제3항 "(a)"의 규정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 중노동을 수반한 구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에서, 권한 있는 법원에 의하여 그러한 형의 선고에 따른 중노동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c) 이 항의 적용상 "강제노동"이라는 용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i) "(b)"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작업 또는 역무로서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의하여 억류되어 있는 자 또는 그러한 억류로부터 조건부 석방 중에 있는 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

(ii) 군사적 성격의 역무 및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국민적 역무

(iii) 공동사회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난시에 요구되는 역무

(iv) 시민으로서 통상적인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 또는 역무

제9조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시에 체포이유를 통고받으며, 또한 그에 대한 피의 사실을 신속히 통고받는다.
3.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을 억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석방은 재판 기타 사법적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출두 및 필요한 경우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4. 체포 또는 억류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억류의 합법성을 지체없이 결정하고, 그의 억류가 합법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5. 불법적인 체포 또는 억류의 희생이 된 사람은 누구든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1.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

2. (a) 피고인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결수와 격리되며, 또한 유죄의 판결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별도의 취급을 받는다.

(b) 미성년 피고인은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에 회부된다.

3.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그들의 연령 및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가 부여된다.

제11조 어느 누구도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한다.

제12조 1.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
3. 상기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기타 권리와 양립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4.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13조 합법적으로 이 규약의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외국인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에 의하여서만 그 영역으로부터 추방될 수 있으며, 또한 국가안보상 불가피하게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추방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고 또한 권한 있는 당국 또는 동 당국에 의하여 특별히 지명된 자에 의하여 자기의 사안이 심사되는 것이 인정되며, 또한 이를 위하여 그 당국 또는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이 그를 대리하는 것이 인정된다.

제14조 1.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의 결정 또는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의 다툼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도기관 및 공중에 대하여서는, 민주 사회에 있어서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거나 또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사법상 이익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견해로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 기타 소송에서 선고되는 판결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당해 절차가 혼인관계의 분쟁이나 아동의 후견문제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다.

2. 모든 형사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보장을 완전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a) 그에 대한 죄의 성질 및 이유에 관하여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신속하고 상세하게 통고받을 것

(b) 변호의 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가질 것과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취할 것

(c) 부당하게 지체됨이 없이 재판을 받을 것

(d) 본인의 출석하에 재판을 받으며, 또한 직접 또는 본인이 선임하는 자의 법적 조력을 통하여 변호할 것. 만약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통지를 받을 것. 사법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충분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법적 조력이 그에게 주어지도록 할 것

(e)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할 것과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기를 위한 증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고 또한 신문받도록 할 것

(f)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것

(g)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

4.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절차가 그들의 연령을 고려하고 또한 그들의 갱생을 촉진하고자 하는 요망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5.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그 판결 및 형벌에 대하여 상급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어떤 사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로 발견된 사실에 의하여 오심이 있었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파기되었거나 또는 사면을 받았을 경우에는 유죄판결의 결과 형벌을 받은 자는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다만, 그 알지 못한 사실이 적시에 밝혀지지 않은 것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그에게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어느 누구도 각국의 법률 및 형사절차에 따라 이미 확정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 선고를 받은 행위에 관하여서는 다시 재판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 1.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어느 누구도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도 중한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범죄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후에 보다 가벼운 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률에 정해진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는다.

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사회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행위시에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당해인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1.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 후견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제19조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20조 1.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도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2.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제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22조 1.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이 조는 군대와 경찰의 구성원이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하는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제23조 1.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혼인적령의 남녀가 혼인을 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가 인정된다.
3. 혼인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 없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혼인 기간 중 및 혼인 해소시에 혼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 및 책임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혼인 해소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필요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24조 1. 모든 어린이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또는 출생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족, 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어린이는 출생 후 즉시 등록되고, 성명을 가진다.
3. 모든 어린이는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모든 시민은 제2조에 규정하는 어떠한 차별이나 또는 불합리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다음의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
(a)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b)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되는 것
(c) 일반적인 평등 조건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것

제2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제27조 종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그러한 소수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 4 부

제28조 1. 인권이사회(이하 이 규약에서 이사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사회는 1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하에 규정된 임무를 행한다.

2. 이사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인권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이 규약의 당사국의 국민들로 구성하고, 법률적 경험을 가진 약간명의 인사의 참여가 유익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3. 이사회의 위원은 개인적 자격으로 선출되고, 직무를 수행한다.

제29조 1. 이사회의 위원은 제28조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선거를 위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 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2.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2인 이하의 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러한 자는 지명하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3. 동일인이 재지명 받을 수 있다.

제30조 1. 최초의 선거는 이 규약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34조에 따라 선언된 결원의 보충선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구성을 위한 각 선거일의 최소 4개월 전에, 이 규약당사국이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위원후보 지명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국에 서면 초청장을 발송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후보들을 지명국 이름의 명시와 함께 알파벳 순으로 명단을 작성하여 늦어도 선거일 1개월 전에 동 명단을 이 규약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4. 이사회 위원의 선거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국제연합 본부에서 소집한 이 규약 당사국 회합에서 실시된다. 이 회합은 이 규약당사국의 3분의 2를 정족수로 하고,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 대표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다수표를 획득하는 후보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제31조 1. 이사회는 동일국가의 국민을 2인 이상 포함할 수 없다.

2. 이사회의 선거에 있어서는 위원의 공평한 지리적 안배와 상이한 문명 형태 및 주요한 법률체계가 대표되도록 고려한다.

제32조 1. 이사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모든 위원은 재지명된 경우에 재선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9인의 임기는 2년 후에 종료된다. 이들 9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 선거 후 즉시 제30조 제4항에 언급된 회합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2. 임기 만료시의 선거는 이 규약 제4부의 전기 조문들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제33조 1. 이사회의 어느 한 위원이 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일시적 성격의 결석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한 것이라고 다른 위원 전원이 생각할 경우, 이사회의 의장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를 통보하며, 사무총장은 이때 동 위원의 궐석을 선언한다.

2. 이사회의 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한 경우, 의장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은 사망일 또는 사임의 효력발생일로부터 그 좌석의 궐석을 선언한다.

제34조 1. 제33조에 의해 궐석이 선언되고, 교체될 궐석위원의 잔여임기가 궐석 선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지 아니할 때에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이를 통보하며, 각 당사국은 궐석을 충원하기 위하여 제29조에 따라서 2개월 이내에 후보자의 지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후보들의 명단을 알파벳 순으로 작성, 이를 이 규약의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보궐선거는 이 규약 제4부의 관계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3. 제33조에 따라 선언되는 궐석을 충원하기 위하여 선출되는 위원은 동조의 규정에 따라 궐석위원의 잔여임기 동안 재직한다.

제35조 이사회의 위원들은 국제연합 총회가 이사회의 책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될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원에서 동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수를 받는다.

제36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규정상 이사회의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제37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최초 회의를 국제연합본부에서 소집한다.

2. 최초 회의 이후에는, 이사회는 이사회의 절차규칙이 정하는 시기에 회합한다.

3. 이사회는 통상 국제연합본부나 제네바 소재 국제연합사무소에서 회합을 가진다.

제38조 이사회의 각 위원은 취임에 앞서 이사회의 공개석상에서 자기의 직무를 공평하고 양심적으로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제39조 1. 이사회는 임기 2년의 임원을 선출한다. 임원은 재선될 수 있다.

2. 이사회는 자체의 절차규칙을 제정하며 이 규칙은 특히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a) 의사정족수는 위원 12인으로 한다.

(b)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투표로 한다.

제40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그러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a) 관계당사국에 대하여는 이 규약의 발효 후 1년 이내

(b) 그 이후에는 이사회가 요청하는 때

2. 모든 보고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되며 사무총장은 이를 이사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송부한다. 동 보고서에는 이 규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기재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사회와의 협의 후 해당 전문기구에 그 전문기구의 권한의 분야에 속하는 보고서 관련 부분의 사본을 송부한다.

4. 이사회는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한다. 이사회는 이사회 자체의 보고서와 이사회가 적당하다고 간주하는 일반적 의견을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이사회는 또한 이 규약의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보고서 사본과 함께 동 일반적 의견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5. 이 규약의 당사국은 본 조 제4항에 따라 표명된 의견에 대한 견해를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41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타 당사국이 이 규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 당사국의 통보를 접수, 심리하는 이사회의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을 이 조에 의하여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이 조의 통보는 이 규약의 당사국 중 자국에 대한 이사회의 그러한 권한의 인정을 선언한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될 경우에만 접수, 심리될 수 있다. 이사회는 그러한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당사국에 관한 통보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조에 따라 접수된 통보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a) 이 규약의 당사국은 타 당사국이 이 규약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문제에 관하여 그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통보를 접수한 국가는 통보를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당해 문제를 해명하는 설명서 또는 기타 진술을 서면으로 통보한 국가에 송부한다. 그러한 해명서에는 가능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동 국가가 당해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취하였든가, 현재 취하고 있든가 또는 취할 국내절차와 구제수단에 관한 언급이 포함된다.

(b) 통보를 접수한 국가가 최초의 통보를 접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당해 문제가 관련당사국 쌍방에게 만족스럽게 조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당사국 중 일방에 의한 이사회와 타 당사국에 대한 통고로 당해 문제를 이사회에 회부할 권리를 가진다.

(c) 이사회는, 이사회에 회부된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모든 가능한 국내적 구제절차가 원용되고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다음에만 그 문제를 처리한다. 다만, 구제수단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d) 이사회가 이 조에 의한 통보를 심사할 경우에는 비공개 토의를 가진다.

(e) "(c)"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사회는 이 규약에서 인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기초 위에서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당사국에게 주선을 제공한다.

(f) 이사회는 회부받은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도 "(b)"에 언급된 관계당사국들에게 모든 관련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g) "(b)"에서 언급된 관계당사국은 당해 문제가 이사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동안 자국의 대표를 참석시키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h) 이사회는 "(b)"에 의한 통보의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i) "(e)"의 규정에 따라 해결에 도달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보고서를 사실과 도달된 해결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만 국한시킨다.

(ii) "(e)"의 규정에 따라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보고서를 사실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만 국한시키고 관계당사국이 제출한 서면 의견과 구두 의견의 기록을 동 보고서에 첨부시킨다. 모든 경우에 보고서는 관계당사국에 통보된다.

2. 이 조의 제규정은 이 규약의 10개 당사국이 이 조 제1항에 따른 선언을 하였을 때 발효된다. 당사국은 동 선언문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며, 사무총장은 선언문의 사본을 타 당사국에 송부한다. 이와 같은 선언은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에 의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이 철회는 이 조에 의하여 이미 송부된 통보에 따른 어떠한 문제의 심의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어떠한 당사국에 의한 추후의 통보는 사무총장이 선언 철회의 통고를 접수한 후에는 관계당사국이 새로운 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되지 아니한다.

제42조 1. (a) 제41조에 따라 이사회에 회부된 문제가 관계당사국들에 만족스럽게 타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관계당사국의 사전 동의를 얻어 특별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임명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이 규약의 존중에 기초하여 당해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당사국에게 주선을 제공한다.

(b) 조정위원회는 관계당사국에게 모두 수락될 수 있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관계당사국이 3개월 이내에 조정위원회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성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보지 못하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비밀투표에 의하여 인권이사회 위원 중에서 인권이사회 위원 3분의 2의 다수결 투표로 선출된다.

2.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동 위원은 관계당사국, 이 규약의 비당사국 또는 제41조에 의한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당사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조정위원회는 자체의 의장을 선출하고 또한 자체의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4.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통상 국제연합본부 또는 제네바 소재 국제연합사무소에서 개최된다. 그러나, 동 회의는 조정위원회가 국제연합 사무총장 및 관계당사국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기타 편리한 장소에서도 개최될 수 있다.
5.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국은 이 조에서 임명된 조정위원회에 대하여도 역무를 제공한다.
6. 이사회가 접수하여 정리한 정보는 조정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관계당사국에게 기타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조정위원회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후, 또는 당해 문제를 접수한 후, 어떠한 경우에도 12개월 .이내에, 관계당사국에 통보하기 위하여 인권이사회의 위원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a) 조정위원회가 12개월 이내에 당해 문제에 대한 심의를 종료할 수 없을 경우, 조정위원회는 보고서를 당해 문제의 심의현황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 국한시킨다.

(b) 조정위원회가 이 규약에서 인정된 인권의 존중에 기초하여 당해 문제에 대한 우호적인 해결에 도달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보고서를 사실과 도달한 해결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 국한시킨다.

(c) 조정위원회가 "(b)"의 규정에 의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조정위원회의 보고서는 관계당국간의 쟁점에 관계되는 모든 사실문제에 대한 자체의 조사결과 및 문제의 우호적인 해결 가능성에 관한 견해를 기술한다. 동 보고서는 또한 관계당사국이 제출한 서면 의견 및 구두 의견의 기록을 포함한다.

(d) "(c)"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의 보고서가 제출되는 경우, 관계당사국은 동 보고서의 접수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권이사회의 위원장에게 조정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의 수락 여부를 통고한다.

8. 이 조의 규정은 제41조에 의한 이사회의 책임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9. 관계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제출하는 견적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모든 경비를 균등히 분담한다.
10.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필요한 경우, 이 조 제9항에 의하여 관계당사국이 분담금을 납입하기 전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43조 이사회의 위원과 제42조에 의하여 임명되는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계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연합을 위한 직무를 행하는 전문가로서의 편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제44조 이 규약의 이행에 관한 규정은 국제연합과 그 전문기구의 설립헌장 및 협약에 의하여 또는 헌장 및 협약하에서의 인권 분야에 규정된 절차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이 규약당사국이 당사국간에 발효 중인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정에 따라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른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45조 이사회는 그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한다.

제 5 부

제46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에서 취급되는 문제에 관하여 국제연합의 여러 기관과 전문기구의 책임을 각각 명시하고 있는 국제연합 헌장 및 전문기구 헌장의 규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47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모든 사람이 그들의 천연적 부와 자원을 충분히 자유로이 향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6 부

제48조 1. 이 규약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 전문기구의 모든 회원국,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모든 당사국 또한 국제연합 총회가 이 규약에 가입하도록 초청한 기타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규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규약은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5.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규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들에게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통보한다.

제49조 1. 이 규약은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2.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에 이 규약을 비준하거나 또는 이 조약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이 규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제50조 이 규약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51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개정안을 접수하는 대로, 각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회부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하에 동 회의를 소집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의 승인을 얻고, 각기 자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이 규약당사국의 3분의 2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시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고, 여타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규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의하여 구속된다.

제52조 제48조 제5항에 의한 통보에 관계없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동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다음을 통보한다.

(a) 제48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b) 제49조에 의한 이 규약의 발효일자 및 제51조에 의한 모든 개정의 발효일자

제53조 1. 이 규약은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이며 국제연합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48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에게 이 규약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서명자들은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1966년 12월 19일 뉴욕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이 규약에 서명하였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채택일 1966. 12. 16 / 발효일 1976. 3. 23 / 당사국 수 104 / 대한민국 적용일 1990. 7. 10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하 "규약"이라 칭한다)의 목적 및 그 제규정의 이행을 더욱 잘 달성하기 위하여 규약 제4부에서 설치된 인권이사회(이하 "이사회"라 칭한다)가 규약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침해의 희생자임을 주장하는 개인으로부터의 통보를 이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접수하고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된 규약당사국은 그 관할권에 속하는 자로서 동국에 의한 규약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침해의 희생자임을 주장하는 개인으로부터의 통보를 접수하고 심리하는 이사회의 권한을 인정한다. 이사회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규약당사국에 관한 어떠한 통보도 접수하지 않는다.

제2조 제1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규약에 열거된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들은 모든 이용가능한 국내적 구제조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이사회에 심리를 위한 서면통보를 제출할 수 있다.

제3조 이사회는 이 의정서에 따른 통보가 익명이거나, 통보제출권의 남용 또는 규약규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그러한 통보를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1. 제3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사회는 이 의정서에 따라 제출된 통보에 대하여 규약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2. 이 당사국은 6개월 이내에 그 문제 및 취하여진 구제조치가 있는 경우 이를 설명하는 서면 설명서 또는 진술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5조 1. 이사회는 개인 및 관련당사국으로부터 입수된 모든 서면정보를 참고하여, 이 의정서에 따라 접수된 통보를 심리한다.

2.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으로부터의 어떠한 통보도 심리하지 않는다.
   (a) 동일 문제가 다른 국제적 조사 또는 해결절차에 따라 심사되고 있지 않을 것.
   (b) 개인이 모든 이용 가능한 국내적 구제조치를 완료하였을 것. 다만, 이 규칙은 구제조치의 적용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이사회는 이 의정서에 따라 통보를 심사할 때에는 비공개 회의를 갖는다.
4. 이사회는 관련당사국과 개인에게 이사회의 견해를 송부한다.

제6조 이사회는 규약 제45조에 의한 연례보고서에 이 의정서에 따른 활동의 개요를 포함한다.

제7조 이 의정서의 규정은 1960년 12월 14일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식민지와 그 인민에 대한 독립부여 선언에 관한 결의 1514(XV)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국제연합 헌장과 국제연합 및 그 전문기관하에서 체결된 여타 국제협약과 문서에 의하여 이들에게 부여된 청원권을 어떤 경우에도 제한하지 않는다.

제8조 1. 이 의정서는 규약에 서명한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규약을 비준하였거나 이에 가입한 국가들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의정서는 규약을 비준하였거나 이에 가입한 모든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발효한다.
5.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들에게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통보한다.

제9조 1. 규약의 효력발생을 조건으로, 이 의정서는 1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2. 1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에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 이 의정서는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제10조 이 의정서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11조 1. 이 의정서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개정안을 접수하는 대로, 각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회부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당사국 중 최소한 3분의 1이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에,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하에 이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 출석하여 표결하는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의 승인을 얻고, 각기 자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이 의정서 당사국의 3분의 2 다수가 수락하는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시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고, 여타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의정서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의하여 구속된다.

제12조 1. 당사국은 언제든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 폐기는 동 폐기가 발효하기 전에는 제2조에 의해 제출된 통보에 대하여 이 의정서의 규정이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13조 제8조 제5항에 의한 통보에 관계없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규약 제48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다음을 통보한다.
(a) 제8조에 따른 서명, 비준 및 가입
(b) 제9조에 따른 이 의정서의 발효일자 및 제11조에 의한 모든 개정의 발효일자
(c) 제12조에 따른 폐기

제14조 1. 이 의정서는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이며 국제연합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규약 제48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에게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